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20나1623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
담당변호사 김성진,추은혜

피고,항소인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재(소송구조)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우선

변론 종결 2020. 10. 27

판결선 고 2020. 11. 26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29. 선고 2019가단1933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 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, 326, 684원과

그중 106,8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1.부터 2019. 5. 15.까지는 연 9%, 2019. 5. 16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E공사는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에게 G 내 상가를 임대하였는데, C는 임대 차종료 후 C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C의 E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2013. 10. 30. 원고와 피보험자 E공사, 보험가입금액 106,800,000원, 보증내용 C의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, 보험기간 2013. 11. 1.부터 2019. 12.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.

나.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C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 대보증(이하 '이 사건 연대보증'이라 한다)하였다.

다. C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모공사에 대한 G 내 상가 명도의무를 지연하였고, 원고는 2018. 10. 31. E공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06,800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

라.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8. 11. 30. 기준 107,326,684원(= 원금 106,800,000원 + 2018. 11. 1.부터 2018. 11. 30.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6%에 의한 지연손해금 526,684원)이고, 2018. 12. 1.이후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9%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연대보증인인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7,326,684원과 그중 원금 106,800,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중대한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확정한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, 이 사건 연대보증은 C의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의무 지연에 기한 E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7,326,684원과 그중 구상원금 106,8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C에게 송달된 날인 2019. 5. 15.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판사 김유성